

IFRS Brief

IFRS Newsletter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2017년 3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IASB가 발표한 IFRS 기준서 제·개정 사항, 공개초안(Exposure Draft, “ED”), 토론서(Discussion Paper, “DP”) 및 해석서 초안(Draft Interpretation)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초안] IFRS 9 ‘금융상품’ – 부의 보상이 있는 중도상환 특성

IASB가 2014년 7월에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를 발표한 이후에 해석위원회는 특정 중도 상환 가능한 금융상품을 IFRS 9에 따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특히 계약조건에서 차입자가 채무상품을 상환일의 공정가치 혹은 잔여 계약상 현금흐름을 현재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과 같이 미지급된 원리금보다 적을 수 있는 변동 가능한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 채무상품이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현금흐름을 갖는 것인지 대해 문의하였다.

그러한 계약상 중도상환 특성으로 인해 대여자는 실질적으로 미지급된 원리금보다 적은 중도 상환 금액을 수용해야 하는 것을 강요받을 수 있다. 사실상 그러한 중도상환 금액은 차입자가 해당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라 할지라도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결과가 된다. 현행 IFRS 9에 따르면 그러한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리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금융상품도 상각후원가 측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IFRS 9를 좁은 범위로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중도상환 특성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계약을 조기에 “청산하는 것을 선택한(혹은 조기청산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수령하더라도” 최초 인식 시에 중도상환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고,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Contents

IFRS 뉴스레터 2017년 5·6월호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1

- I. [공개초안] IFRS 9 ‘금융상품’ –
부의 보상이 있는 중도상환 특성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상황 2

- I. 주요재무제표
- II.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III.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Global 동향 6

- I. 2017년 3월, 4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 II. 2017년 3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IFRS 실무적용 해설 21

-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지분의 손상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 현황



IASB가 2017년 4월말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현재상황	진행계획	
		6개월 내	6개월 이후
기준서 등			
보험계약(*)	기준서 초안 작성중	기준서 발행	
개념체계	개념체계 작성 중		개념체계 발행
공시개선 - 중요성 실무서	실무서 작성 중	실무서 발행	
공개조안			
공시개선 - 중요성의 정의	공개조안 작성 중	공개조안 발행	
토론서			
요율규제활동	분석 중		토론서 발행
공시개선 - 공시의 원칙	의견수렴 중		프로젝트의 방향 결정
주요재무제표	분석 중		토론서 또는 공개조안 발행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분석 중		토론서 발행
동적 위험관리	분석 중		토론서 발행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분석 중		토론서 발행
영업권과 손상	분석 중		프로젝트의 방향 결정
할인율	분석 중	연구 결과 요약 발표	
주식기준보상	초안 작성 중	연구 결과 요약 발표	

(*)5월 중 기준서 IFRS 17 공표됨

위의 주요 프로젝트 중 IASB의 3, 4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주요재무제표

IASB는 2017년 3월 회의에서 재무성과표의 중간합계와 분류, 통합표시 및 세분화에 대한 지침을 논의하였다.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IASB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 a. EBIT를 재무성과표의 중간합계에 표시하도록 요구
- b. 금융수익·비용 및 세금의 차감 전 이익으로서의 EBIT 정의
- c. 기업의 자본구조와 관련된 수익·비용으로서 금융수익·비용의 설명

IASB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 a. 기업의 자본구조를 정의하는 방법
- b.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과 같은 특정 수익·비용 항목을 처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한지 여부

영업성과측정치(‘Management operating performance measure’)

IASB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 a. 영업성과 측정치를 IASB에서 정의하는 것이 아닌 기업들이 스스로 관리영업성과 측정치를 정의하여 표시 할 것을 요구
- b. 중간합계가 IAS 1 문단 85, 85A, 85B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드물게 발생하는 항목² 또는 자주 발생하는 항목 중 일부 항목(예시 : 주식보상비용 등)을 제외하고 관리영업성과 측정치를 산정하는 것을 허용
- c. 관리영업성과 측정치의 표시와 같은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시사항 요구

‘분류’, ‘통합표시’ 그리고 ‘세분화’에 대한 일반지침

IASB는 IAS 1 ‘재무제표 표시’에서 재무제표 정보의 ‘분류’, ‘통합표시’ 및 ‘세분화’에 대한 일반지침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개발할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1 85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당기순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항목 (문단 82에서 열거한 항목의 세분화 포함),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85A 문단 85에 따라 중간합계를 표시할 때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고 측정된 금액으로 이루어진 항목들로 구성한다.
(2) 중간합계 구성항목을 명확하고 이해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명명한다.
(3) 문단 45에 따라 매기 일관되게 한다.
(4) 포괄손익계산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중간합계와 합계보다 더 부각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85B 기업은 문단 85에 따라 표시된 ‘중간합계’와 포괄손익계산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요구하는 ‘중간합계 또는 합계’와의 차이를 조정하는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2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란, 예측 가능한 미래에 기업이 영업하는 환경에서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a. 재무제표의 합산과 구분에 대한 원칙
- b. ‘분류’, ‘통합표시’ 그리고 ‘세분화’ 개념의 정의
- c. 재무제표 작성 시 ‘분류’, ‘통합표시’ 그리고 ‘세분화’를 적용하는 단계에 대한 지침

Next steps

IASB는 이번 논의사항을 더욱 명확히 하고,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논의 하기로 하였다.

- a. 조정된 기본주당이익
- b.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더 좋은 방법
- c.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결과에 대한 표시
- d. 현금흐름표의 목표된 개선사항
- e. 금융산업과 같은 특수한 산업에 대한 주요재무제표의 예시 개발

II.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IASB는 3월 회의에서 개념체계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였다.

IAS 8.11의 개정사항³(IAS 8.11이 참조하고 있는 개념체계의 변경)을 요율규제활동에 적용하는 방법

IASB는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 ✓ 공개초안에 따르면, IAS 8.11은 규제이연계정에 대한 회계정책 개발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임.
대신, 개념체계를 참조하여 규제이연계정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한 기업은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미래 기준서를 적용할 때까지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됨
- ✓ IFRS 14를 적용하여 개념체계를 참조하지 않은 기업은 새로운 회계정책을 선택할 경우에도 계속하여 참조하지 아니함
- ✓ 규제이연계정은 다음으로 정의됨
 -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 비용(또는 수익) 계정의 잔액
 - IFRS 14에서 정의된 요율규제자에 의해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요율 설정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또는 수익) 계정의 잔액

³ IAS 8.10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 (1)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
- (2) 다음에 따른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
 - (i) (ii)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
 - (ii) 규제이연계정과 관련된 회계정책이라면 개념체계(Framework). 규제이연계정은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 비용(또는 수익) 계정의 잔액이나 IFRS 14에서 정의된 요율 규제자에 의해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요율설정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또는 수익) 계정의 잔액이다.

III.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자기지분상품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Gamma approach*의 적용

IASB는 *Gamma approach*⁴에서 기능통화가 아닌 확정금액의 외화와 확정수량의 지분상품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은 부채로 분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종속회사의 기능통화인 외화로 표시된 자기지분상품 관련 파생상품’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자본과 부채 중 무엇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⁵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 ✓ 자기지분상품 관련 파생상품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 표시통화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것 (연결재무제표 표시통화로의 환산 포함)은 파생상품의 자본·부채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기업이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파생상품 발행 시, 그 지분상품을 발행한 기업의 기능통화를 기준으로 파생상품의 외화 표시 여부를 판단함. 만약, 지분상품 발행 기업의 기능통화와 파생상품의 통화가 다를 경우, 해당 파생상품은 잔여 금액뿐만 아니라 외화 변동에도 의존함. 따라서 이러한 파생상품은 잔여지분을 나타내야 한다는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채로 분류함

☞ 예를 들어, 국내기업인 지배회사가 미국에 있는 종속회사(기능통화는 USD)가 발행한 보통주에 대해서 콜옵션(행사가격은 KRW임)을 발행하였음. 이 때, 종속회사의 기능통화가 USD이므로 동 콜옵션은 외화표시 파생상품이 됨. 그 파생상품은 USD의 잔여금액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KRW의 가치변동위험에도 노출되므로 연결재무제표에서 부채로 분류함

다른 IFRS 기준서와의 상호작용

IASB는 *Gamma approach*가 수정된 개념체계, 금융상품 기준서 및 관련 해석서, 주당이익, 주식 기준보상 등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IASB는 향후 토론서(Discussion Paper)에 이러한 영향을 포함할 예정이다.

Due process 및 토론서 초안 준비

IASB는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프로젝트의 토론서를 발행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수행했음을 확인하였고, 토론서 초안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였다. 토론서에 대한 답변기간은 180일로 하며, 2017년 말까지 토론서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 *Gamma approach*는 부채와 자본 구분 시, 요구되는 결제 시점 및 결제 금액 모두를 고려하는 접근법이다. *Gamma approach*에서는 청산 전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의무가 있거나,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독립적인 금액의 외화와 확정수량의 지분상품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은 *Gamma approach*에서 부채로 분류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 때, 종속회사의 기능통화로 표시되고 자본으로 분류된 파생상품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논의가 이에 해당한다.

5 IASB는 2016년 12월 ‘확정대확정’ 요건을 위배하지 않는 변수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기능통화가 아닌 확정금액의 외화와 확정수량의 지분상품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은 *Gamma approach*에서 부채로 분류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 때, 종속회사의 기능통화로 표시되고 자본으로 분류된 파생상품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논의가 이에 해당한다.

Global 동향

I. 2017년 3월과 4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IASB의 주요 프로젝트 외에 2017년 3월과 4월의 IASB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FRS 9] – 금융부채의 제거 목적 상 ‘10퍼센트’ 테스트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수료

IASB는 다음 연차개선사항의 일환으로 IFRS 9을 개정하도록 한 해석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논의하였다. 제안된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10퍼센트’ 테스트를 수행할 때, 변경된 현금흐름에 포함하는 수수료는 ‘대여자와 차입자간 혹은 대여자 또는 차입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을 포함한다고 규정할 것이다.

IASB는 위의 논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 ✓ 다음 연차개선사항에 동 개정사항을 포함함
- ✓ 개정사항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기업은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시점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한 금융부채의 변경이나 교환에만 개정사항을 적용하도록 제안함

2. [IAS 19, IFRIC 14] – IAS 19 and IFRIC 14의 개정

IASB는 2015년 6월에 IAS 19 ‘종업원급여’와 IFRIC 14 ‘IAS 19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구 및 그 상호작용’에 대한 개정 공개초안 ‘제도개정, 축소, 정산 시 재측정 / 확정급여제도로부터의 환급가능성’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 공개초안에서는 보고기간 중 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제도사건 : Plan events)이 발생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한 경우 후속기간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 시 사용한 가정(수정된 가정)을 이용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해당 개정안의 BC17, BC19에서 개정으로 인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이해 가능성이 향상되며 제도의 개정에 대한 실무상 회계처리의 다양성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현행 IAS 19 문단 99에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으로 인한 효익이 추가적 원가를 초과할 것이며, IAS 8 문단 8의 회계정책의 적용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개정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 여부와 시기에 대한 현행 IAS 19의 요구 사항⁶을 변경하지 않으며, 이번 개정의 목적은 보고기간 중 제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문단 99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는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이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중요성의 일반적인 개념을 제안된 개정사항에 적용하는 방법이 분명하지 않고, 개정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더 빈번하게 재측정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왜냐하면 현행 IAS 19에서 제도사건은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고, 개정안에서는 제도사건 발생으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 한 경우 이후 후속기간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는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안에 의하면 제도사건은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 뿐만 아니라 제도사건의 발생 이후 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견제출자들은 개정안에 따르면 제도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에는 중요한 영향이 있지만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에는 중요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 제도사건의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따라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측정하는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해석위원회는 3월 회의에서 중요하지 않은 제도사건을 배제하는 추가적인 요건은 매우 주관적인 사항이고, 그러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개정안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중요성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것은 경영진이 판단할 사항으로 남겨두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의견제출자의 우려대로 개정안에 따르면 제도사건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게 되므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빈도와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논의 결과에 따라 IASB에 다음 사항을 건의하였다.

- ✓ IAS 19의 개정범위에 중요하지 않은 제도사건을 명백하게 배제하지 않음
- ✓ IAS 19 문단 99⁷를 적용할 때, 개정사항이 회사의 중요성의 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론도출근거에 설명함
- ✓ 순확정급여채무의 측정 빈도와 시기에 대해 설명한 개정 공개초안의 결론도출근거의 내용을 삭제함

6 IAS 19 문단 99에서는 제도의 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했을 때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도록 요구함

7 IAS 19.99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을 결정하기 전에 사외적립자산의 현재 공정가치와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전의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를 반영하는 현재의 보험수리적 가정(현행 시장이자율과 그 밖의 현행 시장 가격 포함)을 사용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한다.

IASB는 해석위원회의 건의사항에 동의하였고, IAS 19와 IFRIC 14 개정사항의 경과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결론내렸다.

- ✓ IFRIC 14의 개정사항을 소급적으로 적용함(IAS 19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예외(예 : 재고자산에 포함된 종업원급여 원가) 허용)
- ✓ IAS 19의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함
- ✓ 최초적용 예외규정을 두지 않음

IASB는 다음 회의에서 해당 개정사항에 대한 효과 및 시행일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3. [IFRS 3, IFRS 11] – IFRS 3 ‘사업결합’, IFRS 11 ‘공동영업’의 개정

IASB는 공동영업의 당사자가 추가로 지분을 취득 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지분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중요한 변동 없이 개정안을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였다.

- ✓ IFRS 3 ‘사업결합’ – 공동영업의 당사자 또는 공동영업자가 지분의 추가취득으로 인하여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지분에 대하여 재측정 할 것을 명확히 함**
- ✓ IFRS 11 ‘공동약정’ – 공동영업의 당사자가 지분의 추가 취득으로 인하여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지분에 대하여 재측정하지 아니 할 것을 명확히 함**

4. [IFRS 3] – 사업의 정의

IASB는 ‘사업의 정의와 이전 보유지분의 회계처리’에 대한 공개초안(*Exposure Draft – Definition of a Business and Accounting for Previously Held Interests*)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IASB는 취득한 자산집단의 총 공정가치가 단일 또는 유사 자산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면 취득한 자산과 활동의 집합을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제안(이하 ‘선별검사’)에 대해 논의하고, 아래와 같이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 a. 선별검사는 거래 별로 선택하여 적용함
- b. 선별검사는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임
- c. 선별검사 시 총자산에 세무적 속성을 배제함(예 : 취득한 자산(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의 발생에 따른 영업권 증가액과 이연법인세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 d. IFRS 16 ‘리스’에 정의된 사용권자산도 단일 자산에 포함함
- e. 선별검사 시 유사자산으로 분류하여 선별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일 자산의 성격과 자산을 통해 산출물을 창출하고 관리하는데 관련된 위험을 고려함
- f. e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현행 분류 규정(IAS 38 ‘무형자산’, IAS 16 ‘유형자산’ 및 IFRS 7 ‘금융상품 : 공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IASB는 향후 회의에서 동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른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II. 2017년 3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2017년 3월의 IFRS 해석위원회에서 논의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FRS IC Tentative Agenda decisions

2017년 3월 해석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Tentative agenda decision으로, 의견수렴 결과 달라질 수 있다.

(1) [IFRS 1] IFRS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해석위원회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계상하고 있는 종속기업이 지배회사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IFRS 1의 문단 D16을 적용하여 지배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으로 누적환산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IFRS 1의 문단 D16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이 ‘자산과 부채 측정’ 시에 적용하는 면제조항이다. 해석위원회는 종속기업이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누적환산차이는 자산이나 부채가 아니므로, 종속기업이 IFRS 1의 문단 D16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석위원회는 IFRS 1의 문단 18에서 면제조항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속기업이 IFRS 1의 문단 D16의 면제조항을 누적환산차이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종속기업이 최초채택기업이 될 때 누적환산차이에 대하여 면제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IFRS 1 문단 D12-D13⁸의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이 문단은 종속기업이 전환일의 누적환산차이를 0이나 소급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8 IFRS 1.D12 : IAS 21은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1) 일부 환산차이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누적한다.
- (2)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관련 위험회피 평가손익이 있는 경우 포함)는 처분손익의 일부로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IFRS 1. D13 : 그러나 최초채택기업은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누적환산차이에 대하여 위의 규정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최초채택기업이 이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모든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0으로 간주한다.
- (2) 해외사업장의 후속적인 처분으로 인한 손익에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한 환산차이는 제외하며 이후에 발생한 환산차이를 포함한다.

해석위원회는 최초채택기업이 누적환산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행 기준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이슈를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 [IFRS 9] 금융상품 - 제거되지 않는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이나 교환

해석위원회는 금융부채의 조건이 변경되거나 금융부채가 교환되었지만 제거되지는 않는 경우의 회계처리, 즉 IFRS 9을 적용하였을 때, 조건 변경일이나 교환일에 조건 변경이나 교환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조정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다.

해석위원회는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어 발생한 조정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라는 IFRS 9.B5.4.6의 요구사항은 금융부채의 조건이 변경되거나 금융부채가 교환되었지만 제거되지는 않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현금흐름 추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결론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었거나 변경되었으나 그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IFRS 9의 요구사항 및 IFRS 9.Appendix A의 상각후원가의 정의와도 일관된다고 판단하였다.

IFRS 9.B5.4.6을 적용할 때에는 조건이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해당 금융부채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재계산해야 하고, 재계산 결과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조정금액은 조건 변경일이나 교환일에 수익이나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해석위원회는 IFRS 9에서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 IFRS 9.5.4.3⁹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이 금융부채의 조건이 변경되거나 금융부채가 교환되었지만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회계정책을 IFRS 9의 최초 적용에 따라 변경하였다면, 기업은 IFRS 9.7.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해석위원회는 IFRS 9의 요구사항과 원칙들이 금융부채의 조건이 변경되거나 금융부채가 교환되었지만 제거되지 않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이슈를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9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었거나 변경되었으나 그 금융자산이 이 기준서에 따라 제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하고 변경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IAS 12] 법인세 - 불확실한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

IAS 12 및 2015년 10월에 발표된 해석서 초안 “법인세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에서는 불확실한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실무상 회계처리에 다양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석위원회는 “불확실한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의 회계처리”를 별도의 기준서 제정 안건으로 정하여 논의해야 할지에 대해 고려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주목하였다.

- ✓ 기업이 이자와 벌금에 대한 지급액 또는 수취액을 법인세로 회계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IAS 12를 적용한다. 만일 IAS 12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IAS 37을 적용함
- ✓ IAS 12 문단 79는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IAS 37 문단 84~85는 충당부채의 유형별로 보고기간의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의 장부금액과 다양한 정보를 요구함. 따라서 법인세와 관련한 이자와 벌금에 대해 회계처리 할 때, IAS 12와 IAS 37 중 어느 기준서를 적용하든지 관계없이 해당 사항이 중요하다면 이러한 이자와 벌금에 대해 공시할 것임
- ✓ IAS 1 문단 122에서는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은 유의적인 회계정책과 함께 공시하도록 요구함

결론적으로 해석위원회는 이자와 벌금에 대한 프로젝트가 IASB나 해석위원회의 현재 안건들 보다 우선순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4) [IAS 19] 종업원 급여 – 다른 국가의 통화를 적용한 국가에서 적용할 할인율

해석위원회는 공식적 혹은 법적 통화로 다른 국가의 통화(USD)를 적용한 에콰도르에서 기업이 퇴직 급여채무 할인할 때 할인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해당 기업은 퇴직 급여채무를 USD로 표시하지만 해당 기업이 운영되는 에콰도르에서는 USD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deep market)이 없다.

질의자는 그러한 상황에서 USD로 표시된 퇴직급여채무를 보유하는 기업은 다른 시장 혹은 해당 채권이 발행된 국가(예 : 미국)의 USD로 표시된 우량회사채로 시장의 깊이를 고려해야 하는지, 아니면 에콰도르에 우량회사채 시장이 두텁지 않으므로 USD 국공채이자율을 사용하는지 질의하였다. 추가로, USD 국공채 이자율은 에콰도르 정부가 발행한 USD 표시 채권의 시장수익률인지, 다른 시장이나 다른 나라의 정부가 발행한 USD 표시 채권의 시장수익률인지도 질의하였다.

해석위원회는 IAS 19 문단 83¹⁰을 적용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목하였다.

10 IAS 19.83 퇴직급여채무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만약 그러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러한 회사채나 국공채의 통화와 만기는 퇴직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 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 특정 통화로 표시된 퇴직급여채무는 그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 시장이 두터운지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그 기업이 운영되는 시장이나 국가로 제한하지 않고, 해당 통화로 표시된 우량 회사채가 발행된 다른 시장이나 국가들을 고려함
- ✓ 해당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의 deep market이 있는 경우, 보고기간 말에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결정함. 기업이 운영되는 시장이나 국가에 그러한 채권의 deep market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함. 질의한 상황에서는,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해 USD로 표시된 에콰도르 정부가 발행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하지 않음
- ✓ 해당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의 deep market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함
- ✓ 기업은 할인율을 결정할 때 참조할 우량회사채나 국공채의 적절한 거래량을 결정하기 위해 판단을 적용함. 채권의 통화와 기간은 퇴직급여채무의 통화와 예상 지급 시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함

해석위원회는 할인율에는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IAS 19 BC130에서는 채무의 측정은 제도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측정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해석위원회는 IAS 19 문단 75와 83의 요구사항 사이에 상호작용을 고려하였다. IAS 19 문단 75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서로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해석위원회는 IAS 19 문단 83을 적용하여 파생된 할인율이 다른 보험수리적 가정들과 어느 정도까지 양립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할인율을 결정할 때 IAS 19 문단 75가 아니라 83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IAS 19의 요구사항이 공식적 혹은 법적 통화로 다른 통화를 적용한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이 이슈를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5) [IAS 32] 금융상품 : 표시 – 중앙청산소 파생상품

일부 국가들은 특정한 파생상품은 CCP(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CCP를 통해 청산하기 위해서, 기업은 청산회원이 되어야 한다. CCP를 통해 청산이 요구되는 상품의 종류와 법적인 환경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해석위원회는 청산회원의 관점에서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되는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

해석위원회는 청산회원은 금융상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으며, 다음의 내용을 논의하였다.

- ✓ IFRS 9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 해당한다면, 청산회원은 IFRS 9(IAS 39)을 해당 계약들에 적용함. IFRS 9과 IAS 39는 기업이 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었을 때 재무상태표에 금융상품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청산회원은 IAS 32.42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별도로 인식하고 표시함
- ✓ IFRS 9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IFRS 기준이 없는 경우라면, 청산회원은 거래에 대한 적정한 회계정책 개발함

해석위원회는 IFRS의 요구사항과 원칙들이 청산 회원의 관점에서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되는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이슈를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6) [IAS 33] 주당이익 – 참가적 지분상품에 대한 지급에서 발생하는 세금 효과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논의를 위해 제출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 기업은 보통주와 참가적 지분상품에 해당하는 두 종류의 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음. 참가적 지분상품의 보유자들은 미리 결정된 산식에 따라 보통주의 주주들과 함께 배당에 참여함
- ✓ IAS 32를 적용하여, 기업은 참가적 지분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했음. 참가적 지분상품에게 지급되는 배당은 보통주 주주들에게 배당이 지급될 때 지급됨
- ✓ 참가적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은 세무 목적상 공제할 수 있음. 따라서, 참가적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은 세무상 이익을 감소시키고 세무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법인세를 감소시킴
(우리나라의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으로 분류되고, 관련 이자가 손금인정되는 것과 동일)

IAS 33 문단 A14는 기업이 배당에 대한 권리 또는 잔여이익의 분배에 참가할 권리에 따라 당기순손익을 각 종류의 주식과 참가적 지분상품에 배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모든 당기순손익을 배당한 것으로 가정할 때 각 지분상품에 돌아가는 부분만큼 이익을 보통주와 참가적 지분상품에 배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질의자는 상기 문단을 적용하면, 당기순이익이 모두 보통주와 참가적지분상품에 모두 배당된 경우 발생할 배당관련 세효과를 당기순이익 산정에 고려해야 하는지 질의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세무상 이익이 IAS 33 문단 A14에 의해서 요구되는 모든 당기순손익을 배당한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기업이 보통주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세무상 이익만큼 보통주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조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기업은 세무상 이익을 자본으로 인식했는지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회계처리가 IAS 33 문단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지배기업의 보통주 1주당 지분의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기본주당이익 정보의 목적과도 일관된다고 판단하였다.

해석위원회는 IAS 33의 요구사항과 원칙들이 제출된 상황에서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이슈를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해석위원회의 결론을 적용하는 예시에 대해 항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7) [IAS 41] '농립어업' -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물자산

해석위원회는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특히, Oil palms에서 자라는 열매가 IAS 41 문단 30¹¹의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추정의 반론'에 해당하는 예시가 될 수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해석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관찰하였다.

- ✓ IAS 41 문단 5C에 따르면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은 생물자산으로 기업은 IAS 41에 따라 Oil palms에서 자라는 열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 IAS 16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Oil palms과 별도로 Oil palms에서 자라는 열매는 IAS 41 문단 10에 따라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하고 자산과 관련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 생물자산으로 인식함
- ✓ 기업은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 말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추정매각부대 원가를 차감한 금액)로 측정하여야 함. 그러나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함
- ✓ IAS 41 문단 30에 따르면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추정함. 그러나 생물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시장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고, 공정가치가 명백히 신뢰성 없게 결정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 시점에 한해 그러한 추정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음. 이후 그러한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순공정가치로 측정함

11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생물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시장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고, 대체적인 공정가치측정치가 명백히 신뢰성 없게 결정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 시점에 한해 그러한 추정에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해석위원회는 IAS 41 문단 30의 ‘공정가치가 명백히 신뢰성이 없는 경우’는 기업이 이를 입증하여야만 한다고 결론 지었다.

IAS 41 문단 BC4C12에서 IASB는 기업이 유의적인 실무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에만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의 공정가치를 명백히 신뢰성 없는 경우에 해당 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유의적인 실무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생산물의 공정가치 측정이 명백히 신뢰성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되는 가정의 차이로 인하여 평가의 결과가 유의적으로 다르게 도출되는 것은 공정가치 측정이 실무상 유의적으로 어렵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의 특정유형이 공정가치를 명백하게 신뢰성 없게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질문은 IFRS를 적용하는데 요구되는 판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적용 질문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해석위원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설명하였고, 결론적으로 해석위원회는 이 이슈를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12 IASB는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때때로 실무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땅에서 자라는 생산물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할 때에도 비슷한 어려움에 부딪힌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에 공정가치 측정 규정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은 IAS 41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그 밖의 생물자산의 경우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생산물을 최초 측정할 때 부딪히는 실무적 어려움이 유의적이라면, IAS 41 문단 10(3)과 30의 면제 규정을 종족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3. IFRS IC Agenda decisions

2017년 3월 해석위원회에서 결정한 Agenda decision은 다음과 같다.

(1) [IFRS 10] 연결재무제표 – 투자기업과 그 종속기업

해석위원회는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투자기업의 규정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IFRS 10에서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투자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IFRS 10.27).

- (1)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얻음
- (2) 사업목적이 시세차익 또는/그리고 투자수익을 위해서만 자금을 투자할 것을 투자자에게 확약함
- (3)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함

기업이 제삼자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가?

IFRS 10에서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한 용역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삼자에게 이러한 용역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투자관리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삼자를 이용해서 제공하는 경우에도 투자기업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이용하여 투자 관련 용역을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투자기업의 두 번째 요건에서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은 시세차익과 투자수익을 명시하였으나, 문단 85C에서는 투자 관련 용역을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제공하고, 그 용역이 기업에 중요하더라도 투자기업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이 문단에 근거하면, 투자 관련 용역이 제삼자에게 제공되더라도 핵심 투자활동에 부수적으로 제공되어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는다면 투자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석위원회는 지배기업인 투자기업의 투자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과 활동인 종속기업은 IFRS 10의 문단 32에 따라 지배기업인 투자기업이 해당 종속기업을 연결할 것이라고 보았다.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목적으로만 존재할 때,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가?

IFRS 10에서는 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지만, 종속기업이 투자기업이 아니고 투자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그 종속기업의 주요 목적과 활동이라면 그 종속기업을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질문은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기 위해 설립되었을 경우 연결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2014년 3월에 유사한 이슈를 논의하면서 종속기업이 세무목적 상 투자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설립되고 다른 활동이 없을 경우에는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와 유사하게 지배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종속기업도 투자 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위의 질문들에 대해 IFRS 기준서 상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할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동 이슈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 [IAS 12] 법인세 - 사업이 아닌 단일자산기업을 취득한 경우의 이연법인세

해석위원회는 유일한 자산으로 투자부동산을 보유하는 기업의 모든 지분을 취득한 거래를 연결재무제표에서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았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 피취득자는 재무상태표에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
- ✓ 지분취득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로 인하여 해당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적음
- ✓ 질의한 거래는 취득한 기업이 사업이 아니므로 IFRS 3의 사업결합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
- ✓ 취득자는 IAS 40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함

질의자는 IAS 12 문단 15(2)¹³의 요구사항이 취득자가 해당 거래의 최초 인식 시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지 문의하였다. 만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취득자가 해당거래의 최초 인식 이후에 해당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함에 따른 이익을 즉시 인식하지 않도록 IAS 12 문단 15(2)가 수정되어야 하는지 검토를 요청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다음을 강조하였다.

- ✓ 해당 거래가 사업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IFRS 3 문단2(2)가 연결재무제표에서 취득자가 취득 가액을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에 배분하는 것을 요구하고,
- ✓ IAS 12 문단 15(2)는 자산 또는 부채가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 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

따라서 취득 시에, 취득자가 연결재무제표에 이연법인세부채가 아닌 오로지 투자부동산만을 인식 한다. 따라서 취득자는 모든 취득가액을 투자부동산에 분배한다.

해석위원회는 IFRS의 요구사항이 해당 거래를 회계처리하는 적절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IAS 12 문단 15(2)의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재고려는 IASB가 고려해야 할 수준의 프로젝트라고 결론내렸다. 결론적으로 해석위원회는 이 이슈를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13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 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3)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펀드매니저의 유의적인 영향력 평가

해석위원회는 펀드매니저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대해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IFRS 10 ‘연결재무제표’와 IFRS 11 ‘공동약정’을 적용한 결과 펀드매니저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해당 펀드에 대한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 내린 상황에서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해당 펀드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

해석위원회는 IASB가 IFRS 10을 공표할 때 IAS 28 상 유의적인 영향력의 정의와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IAS 28에서는 IFRS 10과 달리 대리인의 자격으로 보유하는 의사결정권을 유의적인 영향력 평가 시 어떻게 고려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로 인해 해석위원회는 유의적인 영향력의 정의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없이 상기 요청 사항을 명확히 해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해석위원회는 IFRS 12 ‘타 기업 지분에 대한 공시’에서 타 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결정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현행 IFRS 기준서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해당 질의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동 이슈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4) 상품대출(Commodity loans)

해석위원회는 상품대출거래 중 다음 거래구조의 회계처리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은행은 금을 차입하여 제3자에게 동일한 기간에 더 높은 수수료를 받고 금을 대여한다. 은행은 두 계약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협상하며, 차입자는 계약의 개시 시점에 금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획득하고 계약 만료 시점에 동일한 양과 품질의 금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금의 교환거래에서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계약의 개시시점의 현금흐름은 ‘0’이다.

해석위원회는 은행이 이 거래에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 a. 금(또는 금을 받을 권리)을 나타내는 자산
- b. 금을 인도할 의무를 나타내는 부채

특정한 거래가 현행 IFRS 기준에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IAS 8 문단 10, 11¹⁴에 따라 회계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IAS 1 문단 112(c)¹⁵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상품대출거래와 관련된 회계 처리와 위험의 이해를 위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공시사항이 필요하지 않은지 고려하여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이 문제는 현행 IFRS에 국한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상품과 관련된 광범위한 거래는 좁은 범위의 기준을 재정하는 것이 기업의 효익을 제한하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석위원회는 이 문제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안건에 대해 IASB가 상품대출 회계처리 프로젝트를 수행해 줄 것을 제안한 의견을 받았다. 따라서 IASB는 이 안건과 다른 프로젝트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평가할 예정이다.



14 IAS 8.10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 (1)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
- (2)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

- (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히 표현한다.
- (나)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 (다) 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
- (라) 신중하게 고려한다.
- (마)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IAS 8.11 문단 10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 (1)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
- (2)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

15 IAS 1.112 주석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 (3)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

IFRS 실무적용해설

〈실무적용이슈 No.56〉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지분의 손상

Larger CG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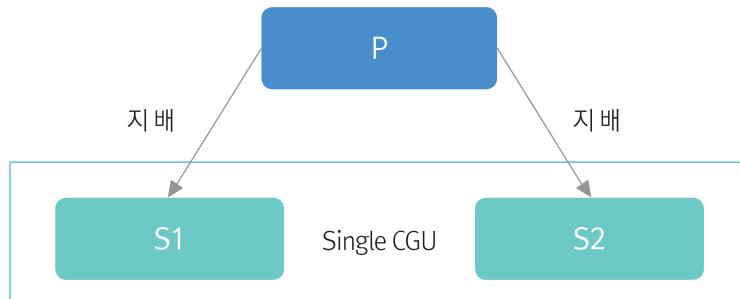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은 별개의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그 주식은 다른 자산의 현금흐름과는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직관적일 수 있다. 따라서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현금창출단위(CGU)가 결정되는 방법과 관계 없이 별도재무제표의 관점에서 해당 종속기업투자는 단일 CGU를 구성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접근 방법을 따를 경우, 종속기업투자주식에서 손상의 징후가 발견되면, 해당 투자주식 전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평가하고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종속기업의 자산이 더 큰 CGU(Larger CGU)의 일부분을 구성한다면 별도재무제표의 관점에서도 종속기업투자주식이 Larger CGU에 포함되어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KPMG의 견해로는 종속기업 지분이 다른 자산들을 포함하는 CGU의 일부를 구성 하는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에서도 해당 지분만 별도로 손상평가를 하는 것 보다 Larger CGU수준에서 손상평가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사례 1.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 – Larger CGU

기업 P는 종속기업 S1, S2를 보유하고 있다. S1과 S2는 P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단일의 CGU로 식별되었다. 또한 S1의 취득 시에 인식된 영업권은 두 종속기업간의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P의 연결재무제표에서 해당 CGU로 배분되었다. 기업 P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측정한다.



해당 사례에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S1과 S2를 하나의 CGU로 식별한 결과 손상차손이 인식되지 않지만, 별도재무제표에서 S1과 S2를 개별 CGU로 식별하였다면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별도재무제표에서 S1의 취득 시에 발생한 영업권은 S1의 장부금액에 모두 포함되나, 시너지 효과로 인한 현금흐름이 S2에서 발생하게 되면 S1 자체의 회수가 능액보다 장부금액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 P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도 S1과 S2를 모두 포함한 Larger CGU의 수준에서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분법 적용 종속기업 지분의 손상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종속기업 지분에 대한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손상결과와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손상결과가 다를 수 있다. 별도재무제표에서는 해당 지분에 대한 손상검사 시에 투자지분에 포함된 영업권을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투자지분 전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손상검사를 하지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이 보유한 자산 및 영업권을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손상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손상의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례 2. 지분법 적용 종속기업 지분의 손상

기업 P는 종속기업 S1만을 보유하고 있고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다. P의 연결재무제표에서 S1은 단일의 CGU이다.

P의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S1에 대한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에서 별도재무제표의 장부금액은 S1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금액이고, 연결재무제표의 장부금액은 S1의 순자산 장부금액을 의미한다.

연도	내용	별도재무제표 BV	연결재무제표 BV
2017년 말	장부금액	10,000 (영업권 5,000 포함)	
2018년 말	손상차손 3,000 발생	7,000 (영업권 2,000 포함)	
2019년 말	손상차손 환입 2,000 발생	9,000 (영업권 2,000 포함)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을 하나의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따라서 2018년 말에 발생한 손상차손을 종속기업투자주식에서 차감하고, 2019년말에 발생한 손상차손환입 2,000을 모두 인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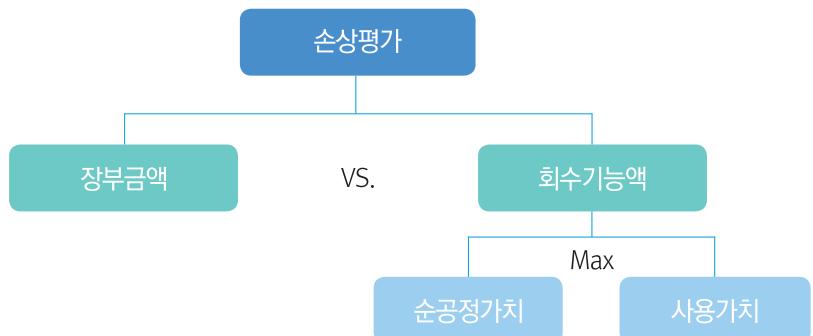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이 보유한 순자산 및 영업권을 별도로 보기 때문에, 종속기업에 대해 손상이 발생하면 손상차손을 영업권에서 먼저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¹⁶ 따라서 2018년 말에 발생한 손상차손은 영업권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권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으므로¹⁷, 연결재무제표에서는 2019년에 발생한 손상차손 환입 2,000을 인식할 수 없다.

16 K-IFRS 1036.104 (1) 우선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17 K-IFRS 1036.124 영업권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아니한다.

회수가능액 중 순공정가치 측정 – Control premium

K-IFRS 1036에서는 손상평가 시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이고 공정가치는 K-IFRS 1113호를 참고하고 있다.



상장사인 종속기업이 단일의 CGU를 구성하고 있고, 해당 CGU의 순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KPMG의 견해로는 다음 두 회계단위(unit of account)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고, 매기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 투자주식 전체(the investment as a whole)
- ✓ 투자를 구성하는 개별 주식(each individual share making up the investment)

종속기업지분 측정의 회계단위를 투자를 구성하는 개별주식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평가일의 “주가 x 보유주식수”로 순공정가치를 측정한다.

반면 종속기업지분 측정의 회계단위를 투자주식 전체로 선택한 경우에는 지배주주가치(Control premium)를 시가총액에 더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종속기업투자의 경우 취득자(시장 참여자)가 종속기업의 취득이 현금흐름을 증가시키거나 위험을 감소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한다고 믿는 경우에 Control premium이 반영된 가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Control premium은 구체적이고 비교가능하며 피투자자의 산업이 속해 있는 현재의 거래들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종 산업 거래에서의 Control premium은 결합기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시너지 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시너지효과는 피투자자의 주식 일부를 시장에서 취득한 취득자에게는 이용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Control premium 금액을 뒷받침 할 만한 현재 시장활동이 없거나, 제한적인 경우에는 과거의 거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Control premium이 임의의 경험에 의한 비율에 근거하거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선택된 금액에 근거하는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전기간에 비하여 달라진 Control premium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KPMG contacts

KPMG 삼정회계법인
Department of Professional Practice / IFRS COE

DPP

현승임 상무
T. (02)2112-0528
E. shyun@kr.kpmg.com

박은숙 이사
T. (02)2112-0673
E. eunsukpark@kr.kpmg.com

한진희 이사
T. (02)2112-6876
E. jinheehan@kr.kpmg.com

한상현 S.Manager
T. (02)2112-7072
E. shan1@kr.kpmg.com

김응주 S.Manager
T. (02)2112-3227
E. eungjookim@kr.kpmg.com

양유정 Manager
T. (02)2112-6940
E. youjeongyang@kr.kpmg.com

국민경 S.Senior
T. (02)2112-6601
E. mkook1@kr.kpmg.com

kpmg.com/kr

© 2017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